

선전용 팜플렛이 우편제도를 통하여

「번지내 투입」의 형식으로 배달된 경우라도

그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일반적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Hagen 지방법원 1990. 10. 10. 자 결정

-18 O 345/90 사건-

적용법조

독일민법 제 823 조, 제 1004 조

판결요지

선전용 팜플렛이 임의로 배달된 것이 아니라 우편제도를 통하여 「번지내 투입」(direct mail)의 형식으로 배달된 경우에라도 그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달된 것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판결이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독일민법 제 1004 조(일반적 인격권의 보호)와 제 823 조 제 1 항을 근거로 하거나 또는 독일민법 제 903 조, 제 1004 조, 제 862 조(소유권 및 점유권의 보호)를 근거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편지함에 선전 팜플렛을 투입하는 것을 중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당 재판부는 위 판례가 정당하다고 여기고 있다) 자기의 편지함에 광고선전물의 투입을 금지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주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위와 같은 스티커에도 불구하고 광고물이 계속 투입되는 경우에는 그 광고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BGH in NJW 89, 902 ff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그들의 편지함에 위와 같은 스티커를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는(피고는 이점을 다투고 있다) 문제로 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1)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990. 2. 15.자의 서신에 의하여 그의 편지함에 더 이상 광고물을 투입하는 것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물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피고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그의 선전 팜플렛을 스스로 배달하지 아니하고 우편제도를 통하여 번지내 투입의 형식으로 배달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중지청구권을 배제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피고로서는 연방우체국에 대하여 원고를 번지내 투입의 배달로부터 제외시켜달라고 지시할 아무런 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피고가 제기한 이의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의 1989. 1. 11.자 판결(3K795/88)에 의하면 가정의 편지함에 스티커 또는 서면으로 번지내 투입 우편물의 수령을 명백히 거절하는 경우에는 독일연방우체국은 수신인에게 번지내 투입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우편가입자가 선전물의 투입을 일반적으로 거절한 경우 피고는 그 우편가입자에게는 번지내 투입 우편물을 배달하지 말아줄 것을 독일연방우체국에 대하여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위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의 판결은 바덴-뷔르템베르크 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의 법적인 판단에 있어서 피고에게 유리한 결과로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피고가 제출한 1990. 4. 24.자 판결의 사본에 의하면 바덴-뷔르템베르크 행정법원은 위 사건이 근본적인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하여 상고를 허가하였고, 따라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우편물의 수령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법률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중지청구권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가 그의 광고 팜플렛을 스스로 배달하거나 또는 피고가 임의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업자를 통하여서라도 이를 배달하게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 재판부의 견해에 의하면 광고주는 그의 선전 팜플렛을 번지내 투입의 방법으로 우편으로 배달함에 의하여 원하지도 아니하는 광고물을 남의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을 중지시켜 달라는 요구를 묵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